
「재정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최종보고서 -

2017. 12.

한 국 재 정 정 보 원

<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3
1. 해외연구 분석	3
2. 국내연구 분석	4
제3장 재정정책의 유형별 분류	14
1. 재정정책 유형 분류의 목적과 필요성	14
2. 재정정책 유형 분류의 쟁점 및 기준 설정	17
3. 재정지출 유형 분류 결과	22
4. 재정지출 항목 식별	28
제4장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41
1. 형평성 분석의 이론적 검토	41
2. 재정정책이 소득분위별 가구에 미치는 효과 분석	43
3. 재정정책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50
제5장 총액 및 자원배분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61
1. 총액 및 자원배분 변화 시나리오 설정	61
2. 분석 결과	61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62
1. 요약	62
2. 정책적 시사점	63
참고문헌	68

<표 차례>

<표 1> OECD ICW Framework의 소득 구성요소	8
<표 2>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소득항목 정의	10
<표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6년	16
<표 4> 기초생활보장 부문 결산 현황	20
<표 5> 중앙정부가 직접 개인 또는 가구에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23
<표 6> 중앙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등의 형태로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25
<표 7> 중앙정부가 기업(사업주)에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27
<표 8> 국가주요지표 중 소득·소비 영역 지표	28
<표 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및 연도별 비교	30
<표 10> 가계동향의 주요 조사항목	34
<표 1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재정지출 항목의 비교	37
<표 12> 2016년 세출 결산서와 가계조사 항목별 구성	42
<표 13>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규모 및 분포	49
<표 14> 지니계수 및 변화율	59
<표 15> 소득, 소비, 저축 : 국민계정체계의 주요 거래 및 관계	64

<그림 차례>

[그림 1] 예산사업 분류체계	21
[그림 2]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표 중 소득 조사항목(복지부문)	29
[그림 3] 분위별 공적 이전소득 규모	45
[그림 4] 분위별 소득 점유율(상: 근로소득, 하: 가처분소득)	46
[그림 5] 로렌츠 곡선	57
[그림 6] 로렌츠 곡선의 격차: 소득항목별	58
[그림 7] 분위별 소득 점유율(상: 가중치 미적용, 하: 가중치 적용)	60

제1장 서론

-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까지는 빠른 경제성장과 평등한 분배를 상대적으로 잘 조화시킨 국가로 인지됨.
-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이 심화되고,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지면서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
-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니계수나 소득 10분위(5분위) 배율 등의 지표를 통해 소득분배가 빠르게 악화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소득의 불평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
 - 최근 들어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 및 통계적 방법이 활용되면서 소득 분포의 최상위층(최상위 1% 또는 5% 등)이 차지하는 소득분포의 비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됨.
- 더불어 환경적 요인으로써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
 - 이에 재원 배분을 통해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 확대
 -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소득 양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정책 추진
-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재정정책으로 소득재분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정책 발굴 및 지원

□ 주요 연구 내용

- 재정정책 유형 분류
 -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성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 재정정책 유형 분류
-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 재정정책을 통한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총액 및 자원배분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가. 소득불평등도 및 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

- 본 연구와 같이 인구의 하위집단(subgroup)이 전체 소득불평등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연구에 비해 소득원천별 요인분해와 관련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 현진권, 임병인(2000)은 유형별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Shorrocks의 분해기법(decompositio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OECD국가들과 비교하였음.
 -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OECD국가에 비하여 심각하지 않으나 사회복지와 조세를 포함한 가처분소득 불평등도는 상대적으로 심각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의 누진적 특성은 크나 조세부담액의 절대적 수준이 낮다고 주장함.

- 임병인(2003)은 『한국가구패널조사』에 Kakwani(1980, 1984)가 개발한 세후지니계수의 분해기법을 적용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한국의 소득세 및 사회복지지출의 재분배효과를 살펴본 뒤, 미국의 추정결과와 비교함.
 - 세후지니계수 자체를 세전지니계수와 조세집중도지수, 그리고 실효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는 수학적 도출식을 이용한 것임.

- 분석결과, 미국의 평균소득세율과 이전소득비중, 그리고 소득세누진성 지수는 한국에 비하여 높고, 이전소득의 역진성지수는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미국 소득세의 누진성지수와 각 유형의 이전소득 역진성지수는 한국의 그것들에 비해 더 크게 세후지니계수의 %변화율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현진권·임병인(2003)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991년,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함.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한 결과, 수직적 형평성보다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너무 심각한 수준임을 보임.¹⁾
- 임병인(2006)은 Podder and Tran- Nam(1991)과 Podder(1993)의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 자료에 적용하여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 그리고 정부의 각종 사회보장정책 등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각종 유형의 소득이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책 실시 전과 후로 구분하여 분석함.

1) 현진권·임병인(2003)이 사용한 분해기법은 Aronson, et. al.(1994)이 제시한 기법으로 조세정책을 통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수직적 형평성 효과와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 순위변화 효과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단, V: 수직적 형평성, H: 고전적인 수평적 불형평성, R: 세후소득 순위변화). $RE = V - H - R = \frac{t}{1-t} P_t - \sum \alpha_X G_{F(X)} - R$

- 권혁진(2010)은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형평성 분해 관련 연구들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비교·검토함.
 - 분석 결과, Urban and Lambert(2005)의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형평성 분해방법에 대한 일반화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수직적 형평성이 최대가 되는 소득구간에서 형평성 분해를 시도할 때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 재분배효과의 손실을 수평적 불공평과 순위변화의 합계치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장연주 외 2인(2011)는 근로소득이 가구소득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임.

- 한편, 본 연구와 유사하게 가구원수 등과 같은 가구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요인을 분해하는 연구로는 Pyatt(1976), Cowell(1980), Shorrocks(1982), Lerman and Yitzhaki(1984), 임병인·전승훈(2005), 이성균·한준(2007), 김문길(2013) 등이 있음.

- 김문길(2013)은 가중치 조정방법과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활용하여 가구 유형별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영향을 주며, 유형별 가구 내(within-group)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대부분을 설명함을 보임.

- 본 연구는 가구의 분화 현상이 점차 심화됨에 착안하여 이와 같은 변화가 지니계수로 대별되는 소득불평등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식별한다는 점에서 대별된다고 할 수 있음.
- 이밖에 김낙년·김종일(2013)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와 그것이 의거하고 있는 가계조사의 문제점을 검토함.
 - 가계조사 결과를 소득세 자료와 국민계정과 같이 비교의 준거가 될 수 있는 통계와 대조한 결과 상위 소득자의 누락과 소득의 과소보고가 상당함을 보임.
 - 더불어 소득분배 지표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자료에 의거한 소득집중도를 제시함.

나. 재정정책 유형과 미시적 자료의 활용과 관련한 연구

- OECD(2013a)는 소득·소비·자산에 대해서 발생주의(accrual) 회계법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법에 따른 통계작성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음.
 - 가계소득에 대한 측정방법은 1966년 UN통계위원회 제 14총회에서 개발된 분배통계시스템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국가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보완
 - 특히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은 큰 틀의 변화없이 일부의 수정·보완을 거쳐 가계소득에 관한 가장 최종적인 국제수준의 가계소득에 관한 국제표준이라 할 수 있으며, OECD(2013a)은 캔버라그룹 핸

드북 2판의 소득기준을 그대로 수용

- OECD(2013a)는 가계소득에 대해 그 형태를 불문하고 가구 또는 가구원이 수령한 일정 기간의 모든 수령액으로 정의하며, 그 구성항목은 <표 1>과 같음.
- 다만 우발이득 또는 일시수령액은 제외된다. 가계소득의 특징은 현재 소비에 사용가능한 자원이며, 현금·실물·기타 자산 등의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않음.

<표 1> OECD ICW Framework의 소득 구성요소

코드	구성요소
II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II.1	직원 소득
II.1.1	현금 임금 및 급여
II.1.2	현금 수수료 및 작업량에 따른 지급액
II.1.3	현금 팁과 보수료
II.1.4	이사 성과급
II.1.5	직원 보수의 일부로서 제공된 주식
II.1.6	이윤배분 상여금 및 기타 형식의 이익과 관련된 지급액
II.1.7	기타 현금 상여금
II.1.8	고용주로부터 무료 또는 보조금이 지급된 재화 및 서비스
II.1.9	해직 및 해지 지급액
II.1.10	고용주의 사회보험 기여금
II.2	자영업으로부터의 소득
II.2.1	법인체가 아닌 자가 사업체로부터의 이익/손실
II.2.2	투입요소의 비용은 제외한, 물물교환을 위하여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II.2.3	투입요소의 비용은 제외한, 그 자산이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된 재화
I2	재산 소득
I2.1	경비를 제외한, 금융적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I2.2	경비를 제외한,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를 제외한 부동산으로부터의 임대료
I2.3	경비를 제외한, 사용료 및 비금융적 자산으로부터의 기타 소득
I3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서비스의 생산으로부터의 소득
I3.1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지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 가치
I3.2	무급의 가사노동의 가치
I3.3	가구의 내구소비재로부터의 서비스의 순가치
I4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하고 수령한 경상적 이전
I4.1	연금 및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기타 현금혜택

코드	구성요소
I4.2	연금 및 고용과 관련된 사회보험으로부터의 기타 혜택
I4.3	정부로부터의 현금의 사회적 지원금부
I4.4	다른 가구로부터 수령한 경상적 이전
I4.5	비영리가구로부터 수령한 경상적 현금이전
I4.6	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하고 수령한 기타 경상적 이전
	생산으로부터의 소득(I1+I3)
	주요 소득(I1+I2+ I3)
IT	총 소득(sum of I1 to I4)
E2	지급한 경상적 이전
E2.1	(환급금을 제외한) 직접세
E2.2	강제적 수수료와 벌금
E2.3	직원 및 고용주의 사회적 보험 기여금
E2.4	기타 가구에 지급한 경상적 이전
E2.5	비영리가구에 지급한 경상적 이전
E2.6	기타 지급한 경상적 이전
ID	가처분 소득(IT - E2)
I5	사회적 현물이전(STIK)
IAD	조정된 가처분 소득(ID + I5)

-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에서는 가구단위 소득통계의 작성에 관한 국제표준을 제공함. 이 때 가구단위 소득통계는 가구의 경제적 행태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소득분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소득분배의 패턴을 이해하고 사회의 조직방법과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임.
 - 둘째, 복지, 조세, 기타 금융정책, 주택, 교육, 노동시장, 보건 등의 영역에서 수립된 정책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인구그룹 또는 일부 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임.
 - 셋째, 다양한 소득분배 패턴이 가구의 경제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는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임.

-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에서는 한 가구의 경제적 후생을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개념으로 표현함. 소비는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주어진 시점에서 가능한 최대의 소비를 선택하는 대신 가용자원의 일부를 저축하는 가구도 존재하므로 불완전함을 지적함. 따라서 한 가구가 지닌 최대한의 경제적 후생을 모두 측정하려면 소득뿐만 아니라 부의 수준, 그 부가 지니는 가치의 변동, 소비수준 모두를 포함한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앞서 살펴본 OECD(2013a)에서 지적하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의 다차원적 특성’과 일치하는 것임.
- 원칙적으로 소득, 지출, 저축, 보유한 부의 가치 등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완벽한 조사자료에 입각하여 경제적 후생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통해 가구가 지닌 경제적 가용자산의 규모와 성격, 처분 방식 등을 관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차원에서 조사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할 경우 다양한 자료로부터 얻은 기록이나 정보를 비교하고 가구가 지닌 여러 유형의 경제적 자원이 결합하여 어떤 분배 형태를 만들어 내는지 알아볼 수도 있음.

<표 2> 2011년 캔버라그룹 핸드북 2판의 소득항목 정의

	개념적 정의	정의
1	고용에 의한 소득	• 엄격한 의미로 고용을 통해 경제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수입만으로 구성됨. 따라서 고용에 의한 소득은 현재 혹은 이전의 유급 직업이나 개인 사업의 결과로 개인 스스로나 부양가족을 위해 받는 현금이나 현물 수입을 의미함
a	근로소득 임금 및 봉급	• 현금 또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현물로 지급되며 다음 요소로 구성

	개념적 정의	정의
	현금 보너스 및 수당	됨
	수수료 및 봉사료	-근무기간 중 또는 근로 후 받는 직접적 임금 및 봉급
	이사 보수(Directors' fees)	-현금보너스 및 수당
	수익 분배금 및 기타 수익과 관련된 수입	-수수료 및 봉사료 -이사 보수
	직원 보수의 일부로 제공되는 주식	-수익분배금 및 기타 수익과 관련된 수입 -연차 또는 기타 유급휴가 등, 비 근무시간에 대한 보수
	고용주로부터 보조받는 재화 및 서비스	-주식 -고용주로부터 보조받는 재화 및 서비스
	해고 및 퇴직수당	※ 개념적으로 근로소득에는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금, 해고 및 퇴직수당 등이 포함되며 이들을 포함시킬 경우 별도로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해야함
b	개인사업소득	
	비법인기업의 손익	• 개인사업에 대한 대가로 개인이 받는 소득으로 순 개인 사업소득에는 해당 기업의 사주, 동업자, 비법인기업에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포함됨. 또한 교환용으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 또는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화의 추정치를 포함함
	교환용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투입비 차감후	
	자가소비용으로 생산된 재화, 투입비 차감후	
2	자산소득	• 자신이 소유한 자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는 수입으로 자산소득에는 금융자산(이자, 배당금) 및 비금융자산(임대료)에서 발생하는 화폐 및 로열티(특허 및 저작권 사용 대가)가 있음
a	비용을 제외한 금융자산소득	•(이자수입) 은행, 건축조합, 신용조합 및 기타 금융기관 계정, 양도성 예금증서, 정부 국채 및 공채, 증권, 다른 가구원에 빌려준 사채 및 대부금 등에서 받은 수입을 의미 •(배당금) 투자자가 직접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만을 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을 의미함
b	비용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소득	• 토지 등과 같은 비생산자산(천연자원)과 주택과 같은 생산자산의 사용의 대가를 받는 수입을 의미함
c	로열티	• 저서 혹은 창작물 등 특허 혹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함
3	자가소비용으로가구에서생산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소득	• 시장이 아닌 해당 가구의 자가소비를 위해 가구내에서 생산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가생산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가주택 및 내구소비재에서 나온 서비스 등도 포함됨. 이들의 가치는 생산에 사용된 비용을 제외한 개념임 ※ 그러나 무급가사서비스의 가치와 내구소비재의 서비스 가치는 소득의 조작적 정의에서는 제외됨. 또한 자가 주택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아닌 최종적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원의 서비스 생산도 전통적으로 SNA의 생산에서 제외됨
a	자가주택서비스의 순가치	• 귀속임대료는 자가주택이 제공하는 주택서비스의 순 추정치를 의미함
b	무급가사서비스 가치	• 요리, 청소, 수리, 육아 등 자가생산된 가사서비스의 추정치가 포

	개념적 정의	정의
		함됨. 무급노동의 기여분은 경제사회적 후생을 분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
c	내구소비재에서 생산된 서비스 가치	• 가구의 내구소비재(차, 세탁기, 냉장고 등)의 서비스에서 얻는 소득의 해당항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귀속가치를 의미함
4	경상이전수입	• 자본이전을 제외한 모든 이전으로 구성됨. 개념적으로 정의하면, 현금, 재화 또는 서비스의 형태를 지닌 모든 경상이전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됨
a	사회보장 연금/제도	• 연금보험(군인연금 및 해외연금), 실업보험 및 건강보험 등,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무 및 법적제도)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연금, 보험급여 및 보험수당이 해당됨
b	연금 및 기타 보험급여	• 정부의 사회보장제도로 충당되지 않고 고용주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그리고 민간출자 보험제도에서 나오는 연금 및 기타 보험급여가 이에 해당됨
c	사회부조급여(사회적 현물이전 제외, 10 참조)	• 사회보장제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정부로부터 받는 사회부조급여(보편적 급여 혹은 자산조사에 따른 급여)를 의미함
d	비영리단체로부터의 경상이전	• 자산단체, 노조,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파업수당, 질병수당, 구호수당 등 정기적 선물 및 재정 지원의 형태로 받는 경상이전을 의미함
e	다른 가구로부터의 경상이전	• 가족 지원금(이혼수당 및 양육비 등)의 형태로 다른 가구로부터 받는 경상이전을 의미함 ※ 유산 혹은 신탁자금에서 나온 정기적 수입, 정기적 선물, 재정지원 혹은 재화나 서비스 형태의 현물이전(주택서비스, 양육서비스 등)도 이에 포함됨
5	생산소득(1+3)	• 고용에 의한 소득 및 자가소비용으로 가구에서 생산된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합해 정의함 ※ 고용에 의한 소득은 고용상태와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유용한 개념이고, 생산소득은 생산적 활동에서 비롯된 모든 소득을 반영하는 개념임
6	본원소득(2+5)	본원소득 = 생산소득 + 자산소득
7	총소득(4+6)	총 소득 = 본원소득 + 이전소득
8	경상이전지출	
a	직접세(환급분 제외)	
b	강제적 징수 요금 및 벌금	
c	가구간 경상이전지출	
d	직원 및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금	
e	비영리단체로의 경상이전	
9	가처분소득(7-8)	가처분 소득 = 총소득 + 경상이전지출 ※ 일정 기준의 기간 소비지출과 저축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분배 분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표임
10	사회적 현물이전(STIK) 수입	•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개인에서 무료로 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됨

	개념적 정의	정의
11	조정 가처분소득(9+10)	조정 가처분 소득 = 사회적 현물이전 + 가처분소득 ※ 조정 가처분소득은 가처분소득보다 더욱 공평하게 분배되는 경향이 있어 총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임
	소득에서 제외되는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손익: 일정 기준기간 금융적, 비금융적 자산과 채무의 가치변화를 의미 • 불로소득이익 및 기타 비정기적, 일회성 소득(복권, 도박, 유산, 등) • 순자산의 감소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산의 매각, 융자금, 예금인출 등이 포함됨

제3장 재정정책의 유형별 분류

1. 재정정책 유형 분류의 목적과 필요성

- 이 장은 재정정책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써 「세출(지출)결산 보고서」의 재정지출을 유형화하여 정책 발굴 및 지원의 일환으로 관련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연구에서는 회계구분 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정책 중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재정지출의 유형을 분류

- 재정정책은 크게 재정지출과 조세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 사회보험, 빈곤 구제 등과 같은 사회후생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됨.
 - 우선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의무)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정부는 소득재분배 대응하기 위한 재정(재량)지출도 증대시키고 있음.
 - 더불어 재정지출이 아닌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지출을 활용한 다양한 대상과 분야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예를 들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EITC), 유아녀가구 소득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CTC)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그리고 고용과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세액공제제도 시행

- <표 3>은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한 것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016년 재정지출 규모(전체 대비 비중)는 112.4조 원(29.1%), 조세지출 규모(전체 대비 비중)는 10.6조원(30%),이며, 합산규모는 123조원(29.1%)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재정지출액: 2016년

(단위: 조원, %)

	조세지출액		재정지출액		합계		합계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A)	전체 대비	(B)	전체 대비	(C= A+B)	전체 대비	
일반공공행정	2.4	6.8%	60.9	15.7%	63.3	15.0%	3.8%
공공질서 및 안전	—	—	17.5	4.5%	17.5	4.1%	—
외교·통일	0.0	0.0%	4.7	1.2%	4.7	1.1%	0.0%
국방	0.6	1.6%	38.0	9.8%	38.6	9.1%	1.4%
교육	1.2	3.5%	53.2	13.7%	54.4	12.9%	2.2%
문화 및 관광	0.0	0.1%	6.6	1.7%	6.6	1.6%	0.3%
환경	0.6	1.8%	6.8	1.8%	7.5	1.8%	8.5%
사회복지 (①)	10.6	30.0%	112.4	29.1%	123.0	29.1%	8.6%
보건 (②)	4.1	11.6%	10.5	2.7%	14.6	3.5%	28.0%
농림수산 (③)	4.8	13.7%	19.3	5.0%	24.1	5.7%	20.0%
산업·중소 및 에너지 (④)	9.8	27.8%	16.1	4.2%	25.9	6.1%	37.9%
교통 및 물류, 통신	0.6	1.6%	19.4	5.0%	20.0	4.7%	2.9%
국토 및 지역개발	0.6	1.6%	3.9	1.0%	4.4	1.1%	12.8%
과학기술	0.0	0.0%	6.7	1.7%	6.7	1.6%	0.0%
합 계	35.3	100.0 %	386.7	100.0 %	422.0	100.0 %	8.4%
주요항목 (①-④)	29.4	83.1%	158.3	40.9%	187.7	44.5%	15.6%

주: 재정지출액의 경우, R&D 분야는 '과학기술'로,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으로 분류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였으며, 「조세의 이해와 쟁점: 통계편」, p.108에서 발췌·재인용

2. 재정정책 유형 분류의 쟁점 및 기준 설정

- 우선 재정정책이 가구 소득 및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크게 ① 현금이전(cash transfers), ② 현물이전(in-kind transfers), 그리고 ③ 조세지출로 구분 할 수 있음.
 - 현물이전: 정부가 현금이 아니라 재화 또는 서비스 등 현물형태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출
 - 조세지출: 비과세·감면 등 형태로 개인에게 제공하는 지출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이 현금이전과 현물이전의 형태로 개인이나 가구에 이 전되는 사업인지 확인해야 할 것임.

- 그러나 「세출예산 보고서」 상에서 세부사업을 통해 전술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나타남. 이와 같은 이유로 재정정책 유형 분류의 기준을 논의하기에 앞서 세출예산의 구조의 개요와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되고 그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되며, 이는 다시 기능별/성질별/기관별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체계로 구분
 -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매년도 '예

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예산과목의 구분을 표시

□ <표 4>에 제시한 바와 「세출예산 보고서」의 경우(암전 미표기) 단위 사업과 지출목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가구로의 이전 및 그 형태를 구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소관의 “세출예산”의 문제점은 항(프로그램) 단위별 예산금액만 정리하고 있음. 이 때 항(프로그램)은 재정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는 가장 포괄적인 구분단위이며, 구체적인 항의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예산안의 법정서류(「국가재정법」 제19조)에서 재정사업의 내용은 오직 항(프로그램)의 제목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음.²⁾

○ 예로, 사회복지(분야)이면서 기초생활보장보건(부문)-기초생활보장(프로그램)-기초생활급여(단위사업)-지출목 수준에서 개인이나 가구로의 이전을 식별할 수 없음. 이 경우 지출목성질별구분, 지출목, 지출세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됨.

□ 이 때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국가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예산과목의 구분을 표시하며, dBrain을 통해 추출한 「세출(지출)결산 보고서」에 나타남.

2) 재정사업의 세부 내용(보충적 예산정보)은 예산안의 첨부 서류에 포함(「국가재정법」 제34조). 이 경우에도 첨부서류 중에서 항(프로그램) 단위의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와 ‘성과계획서’이며, 나머지는 분석적인 통계표에 불과함.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와 ‘성과계획서’에 담고 있는 내용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는 예산의 내용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기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음.

- 다만, 「세출(지출)결산 보고서」를 활용하더라도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이전형태에 대한 추가적인 분류 및 정의가 요구됨.
- 동 보고서의 세부사업, 즉,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transfers)이 최종적으로 개인이나 가구에게 이전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자치단체(지방정부)경상보조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경우가 상존함.

<표 4> 기초생활보장 부문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산출구분	소관	예산	회계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출목 성질별 구분	지출목	지출세목	지출금액(백만원)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1,311.5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27.2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24.0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4.1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복지급여 사후관리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86.1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복지급여 사후관리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1.8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여비	국내여비	22.3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17.0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복지급여 사후관리	물건비	여비	국내여비	103.5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8.8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복지급여 사후관리	물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37.0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물건비	연구용역비	업무용역비	330.8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이전지출	보전금	포상금등	184.9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복지급여 사후관리	이전지출	보전금	보상금	36.1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이전지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3,398,137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급여	이전지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23,543
총지출기준	보건복지부	예산	일반회계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급여	양곡할인	이전지출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	75,039

- 이하에서는 dBrain에서 추출한 2016년도 「세출(지출)결산 보고서」를 활용하여 전술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분석에 활용한 분류 기준에 대해 논의함.
- 우선 dBrain에서 추출한 결산 자료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와 더불어 소관, 예산/기금, 회계구분, 이외 지출목적질별구분, 지출목, 그리고 지출세목으로 구분됨.
 - dBrain의 예산사업 분류체계는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세세세항(내역사업)으로 구분됨([그림 1] 참조).
 - 다만, 제공받은 자료의 제약에 의해 세세세항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1] 예산사업 분류체계



- 분석은 다음의 5개 단계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1-2단계는 필터링을 통해 연구 목적 외 성질과 분야를 소거하였으며, 3-4단계는 개별 세부사업의 검토를 통해 이전(transfers) 사업 여부를 식별하였음. 마지막 5단계는 이전 주체의 형태, 자산조사 여부, 현금 또는 현물 급여 구분 등을 실시하였음.
 - (1단계) ‘지출목적질별구분’이 이전지출인 사업 필터링: 38,513개 중 5,707개
 - (2단계) ‘분야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인 사업 필터링: 1,027개

- (3단계) '지출세목'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현금 또는 현물 등의 직접적인 지원'의 성격을 지난 사업을 구분: 106개
- (4단계)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인건비(세부사업코드 100-199, 321, 601) 필터링: 88개
- (5단계) '지출세목'과 '세부사업'을 검토하여 '중앙정부→개인 및 가계' 인지,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가 현금인지 여부 식별
 - 이 때 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비고에 표기하였음.
 - 해당여부(A): 재정 당국에서 이전되는 대상자가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
 - ex. 우선 지출세목이 보상금, 포상금등, 연금지급금, 보험금
 - ex. 이 중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로 표기
 - 해당여부(A): 재정 당국의 관점에서 민간(사업주, 단체)경상보조이나 최종수혜자는 개인 및 가구인 경우
 - 자산조사 여부: 현물과 현금 등 이전지출의 형태와 무관하게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재정지출 유형 분류 결과

- 우선 세부사업 중 해당여부(A)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은 44개이며, 이중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은 7개, 최종 이전 형태가 현금인 경우는 27개 사업(현물 13개, 현물/현금 3개, 미분류 1개) 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세부사업이 해당여부(A)를 만족하지 못하나 해당여부(B)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은 39개 사업이며, 이외 해당여부(B)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은 5개로 나타남(각각 <표 6>와 <표 7> 참조).

<표 5> 중앙정부가 직접 개인 또는 가구에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해당여부 (A)	해당여부 (B)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	추경국회확정 예산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불용액
차상위계층 지원	○		○	현금	259,330	259,330	259,330	259,330	0
생계급여	○		○	현금	185	185	185	185	0
의료급여경상보조	○		△	미분류	60	60	57	57	3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X	현금	190	190	190	190	0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지원	○		X	현금	3,271	3,271	3,069	3,069	202
보상금	○		X	현금	2,513,017	2,518,717	2,518,702	2,518,702	15
간호수당	○		X	현금	58,981	57,990	57,989	57,989	1
생활조정수당	○		○	현금	12,481	13,236	13,211	13,211	25
6.25자녀수당	○		X	현금	212,320	209,704	209,699	209,699	5
고엽제수당	○		X	현금	252,425	251,168	251,157	251,157	11
무공영예수당	○		X	현금	61,584	60,902	60,899	60,899	3
참전명예수당	○		X	현금	592,389	569,219	569,208	569,208	11
사망일시금	○		X	현금	7,976	8,669	8,668	8,668	1
재해보상금	○		X	현금	11,666	13,866	13,860	13,860	6
영주귀국정착금	○		X	현금	1,020	1,020	670	670	350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		X	현물	817	817	700	700	117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학습보조비등)	○		X	현물	1,885	1,885	1,875	1,875	10
장학금	○		X	현물	512	512	443	443	69
장학금	○		X	현물	18	18	12	12	6
장학금	○		X	현물	3	3	2	2	1
체당금지급	○		X	현금	326,004	371,852	368,710	368,710	3,142

세부사업	해당여부 (A)	해당여부 (B)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	추경국회확정 예산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불용액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X	현물	57	57	56	56	1
장애인자립자금 이차 및 손실보전금	○		○	현물	372	372	208	208	164
참전명예수당	○		X	현금	23	23	20	20	3
퇴직급여	○		X	현금	2,596,683	2,596,683	2,592,637	2,592,637	4,046
퇴직수당	○		X	현금	277,296	277,296	256,571	256,571	20,725
재해보상급여	○		X	현금	112,166	112,166	107,135	107,135	5,031
산재보험급여	○		X	현금	4,292,324	4,292,324	4,280,055	4,280,055	12,269
국민연금급여지급	○		X	현금	18,548,797	18,548,797	17,068,159	17,068,159	1,480,638
고용촉진지원금	○		X	현금	101,327	186,293	186,219	186,219	74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X	현금	417	417	139	139	278
구직급여	○		X	현금	5,122,829	5,056,805	4,686,203	4,686,203	370,602
조기재취업수당	○		X	현금	147,495	213,519	205,710	205,710	7,809
광역구직활동지원금	○		X	현금	267	267	232	232	35
자영업자 실업급여	○		△	현금	5,120	5,120	3,251	3,251	1,869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X	현금	60,839	76,355	76,320	76,320	35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	현금	80,152	80,152	63,264	63,264	16,888
퇴직급여	○		X	현금	11,882,115	12,089,426	12,046,736	12,046,736	42,690
퇴직수당	○		X	현금	2,192,700	1,980,515	1,930,235	1,930,235	50,280
재해보상급여	○		X	현금	126,063	130,937	130,936	130,936	1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2,232,092	2,256,092	2,241,637	2,241,637	14,455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32,451	39,440	38,309	38,309	1,131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433,502	424,705	421,446	421,446	3,259
합계					52,561,221	52,710,375	50,674,114	50,674,114	2,036,261
합계(현물 및 미분류 제외)					52,231,493	52,334,799	50,302,051	50,302,051	2,032,748

<표 6> 중앙정부가 민간경상보조 등의 형태로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해당여부 (A)	해당여부 (B)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	추경국회확정 예산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불용액
주거급여지원	△	○	○	현금	17,727	17,727	17,727	17,727	17,727
장애인의료비지원	△	○	○	현물/현금	500	500	500	500	500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	현금	300	300	300	300	300
기초연금지급	△	○	○	현금	18,022	18,022	18,022	18,022	18,022
보훈대상자교육비지원(수업료면제)	△	○	X	현물	32,441	32,441	32,441	32,381	32,381
진폐위로금지급	△	○	X	현금	67,972	67,972	67,802	67,802	67,802
건강진단지원금	△	○	X	현물	1,280	1,280	1,450	1,439	1,439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	○	X	현금	26,872	26,872	26,872	24,156	24,156
장애인고용장려금	△	△	X	현금	151,796	151,796	158,155	158,155	158,155
고용유지지원금	△	△	X	현금	30,704	30,704	77,504	33,870	33,870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	X	현금	254	254	254	70	70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	X	현금	525,432	525,432	542,757	514,698	514,698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	X	현금	1,488	1,488	1,488	1,474	1,474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	△	현물/현금	2,300	2,300	2,300	2,250	2,250
장년고용지원금	△	○	△	현금	24,026	24,026	27,914	27,625	27,625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	○	○	현물	27,500	27,500	27,500	27,500	27,500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	○	○	현물	5,155	5,155	5,155	5,155	5,155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	○	○	현물	1,214	1,214	1,214	1,214	1,214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	○	X	현금	3,739	3,739	3,739	3,690	3,690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	○	X	현물	2,603	2,603	2,603	2,603	2,603
주거급여지원	△	○	○	현금	1,009,960	1,009,960	942,733	934,705	934,705
교육급여	△	○	○	현금	144,646	144,646	144,646	118,077	118,077

세부사업	해당여부 (A)	해당여부 (B)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	추경국회확정 예산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불용액
생계급여	△	○	○	현금	3,386,137	3,386,137	3,398,137	3,398,137	3,398,137
해산장제급여	△	○	○	현금	22,043	22,043	23,543	23,543	23,543
의료급여경상보조	△	○	△	미분류	4,738,315	4,818,315	4,818,315	4,818,315	4,818,315
장애인의료비지원	△	○	○	현금	35,274	35,274	35,274	35,274	35,27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	○	현물	2,100	2,100	2,100	2,100	2,100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	현금	10,917	10,917	10,917	10,917	10,917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	○	○	현물	66,200	66,200	66,200	66,200	66,200
장애수당(기초)	△	○	○	현금	77,582	77,582	77,134	77,134	77,134
장애수당(차상위 등)	△	○	○	현금	55,059	55,059	55,507	55,507	55,507
장애인연금	△	○	X	현금	558,077	558,077	558,077	558,077	558,077
장애인보조기구지원	△	○	X	현물	2,375	2,375	2,375	2,375	2,375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현물	19,800	22,810	22,644	19,820	19,820
영유아보육료 지원	△	○	X	현물	3,176,076	3,176,076	3,205,217	3,205,217	3,205,217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	X	현물	816,818	816,818	834,673	834,673	834,673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	X	현금	1,219,200	1,219,200	1,180,277	1,180,277	1,180,277
기초연금지급	△	○	○	현금	7,849,729	7,849,729	7,840,451	7,640,681	7,640,68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	현금	72,347	72,347	72,347	72,347	72,347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	○	X	현금	31	31	31	31	31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	○	△	현물/현금	66,376	66,376	66,376	66,376	66,376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	△	현물	3,944,596	3,944,596	3,944,596	3,894,596	3,894,596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원	△	○	X	현금	1,964	1,964	1,964	1,964	1,964
보조공학기기지원	△	○	X	현금	7,200	7,200	7,200	7,200	7,200
합계					28,224,147	28,307,157	28,326,431	27,964,174	27,964,174
합계(현물 및 미분류 제외)					15,383,059	15,383,059	15,355,333	15,046,070	15,046,070

<표 7> 중앙정부가 기업(사업주)에 이전하는 유형의 세부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해당여부 (A)	해당여부 (B)	자산조사 여부	최종이전 형태	추경국회확정 예산액	지출계획현액	지출금액	지출순액	불용액
장애인고용장려금	△	△	X	현금	151,796	158,155	158,155	158,155	0
고용유지지원금	△	△	X	현금	30,704	77,504	33,870	33,870	43,634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	X	현금	254	254	70	70	18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	X	현금	525,432	542,757	514,698	514,698	28,059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	△	현물/현금	2,300	2,300	2,250	2,250	50
합계					710,486	780,970	709,043	709,043	71,927

4. 재정지출 항목 식별

1)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우리나라의 소득·소비·자산 영역에 대한 가구단위 통계로는 가계동향조사와 농가·어가·임가경제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리고 재정패널조사가 있음.
 - 농가·어가·임가 가구는 가계와 영업활동을 겸하는 가구로서 일반적인 가구와는 소득·지출 흐름이 상이하어 별도로 조사
 - 가계동향조사는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가구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조사되며, 그 외의 나머지 통계들은 모두 연도별로 조사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 읍면동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15년부터 매년 4천가구의 표본가구가 교체되어 5년에 걸쳐서 전체 2만가구의 표본이 교체되는 연동패널표본으로 조사
 - 반면, 재정패널조사 역시 전국을 대표하는 약 5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최초 작성당시인 2008년에 추출된 표본가구들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고정패널표본으로 조사되고 있음.

<표 8> 국가주요지표 중 소득·소비 영역 지표

통계명칭	작성기관	작성주기	조사대상
1. 가계동향조사 ^{주1)}	통계청	분기	비농립어가
2.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연간	농가
3. 어가경제조사	통계청	연간	어가
4. 임가경제조사	산림청	연간	임가
5.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통계청	연간	가구
6. 재정패널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간	가구

주1)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 폐지되어 가계지출조사로 변경되었으며, 작성주기도 분기에서 연간으로 변경되었음.

□ 이 연구에서 준거로 삼는 가계금융조사의 공적 이전소득 항목과 구체적 사항은 이하와 같음([그림 2] 참조). 또한 현금 수혜금을 제외하고 현물, 이차보전 등은 조사하지 않는 점이 주요 특징임.

[그림 2]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표 중 소득 조사항목(복지부문)

IV 소득 수입이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해 아래의 해당 항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2015년(1. 1.~12. 31.) 세금공제 전 연간소득을 써넣어 주십시오.

소득	가구원 번호			
	□□	□□	□□	□□
① 근로소득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② 사업소득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③ 재산소득(① + ② + ③)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④ 금융소득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⑤ 임대수입(주택, 건물, 토지)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⑥ 기타(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④ 공적 이전소득(① + ... + ⑦)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① 공적 연금(국민연금 등)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② 기초연금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③ 양육수당(출산장려금 포함)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④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⑤ 국민기초생활수급 지원금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⑦ 기타 정부보조금(①~⑥이외)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⑤ 사적 이전소득(부모, 자녀 등)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 □□ □□ 만원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도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 재산소득: 기타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건물·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 임대수입 등
 □□ 공적 이전소득: 기타 정부보조금(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보훈연금, 체육연금 등)은 경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사회보장 수급액
 □□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 구체적으로 공적 이전소득 조사 상 분류 및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제시한 바와 같으나, 실제 자료의 제공은 “공적 이전소득”으로 합산하여 제시함.

- 공적 이전소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공적 사회보장 수혜금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

금), 별정우체국연금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자로서 소득, 재산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수혜금
-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입양아동수당,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등(보육시설로 입급되는 보육료 등은 제외)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 맞춤형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원금 (가구로 직접 지급되지 않는 의료급여 제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 기타 정부보조금: 고용보험·실업보험 급여, 농어업 정부보조금(쌀 직불금 등), 보훈연금, 체육연금, 장수수당 등
- 이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간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자녀·친지·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 비영리단체 이전소득: 자선단체·노동조합·종교단체 등 민간·비영리단체로부터 장학금·구호금 등의 형태로 받은 현금 및 현물소득을 조사함.

<표 9>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주요 조사항목 및 연도별 비교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조사	가구번호	○	○	○	○	○
가구주	가구주 성별	○	○	○	○	○
가구	가구원수	○	○	○	○	○
	가구유형	○	○	○	○	○
	주택의 종류	○	○	○	○	○
	전용면적	○	○	○	○	○
	입주형태	○	○	○	○	○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자산	자산총액	○	○	○	○	○
	금융자산	○	○	○	○	○
	저축액	○	○	○	○	○
	적립식 저축	○	○	○	○	○
	예치식 저축	○	○	○	○	○
	기타 저축	○	○	○	○	○
	임차보증금	○	○	○	○	○
	실물자산	○	○	○	○	○
	부동산	○	○	○	○	○
	거주주택	○	○	○	○	○
	기타_거주주택	○	○	○	○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	○	○	○	○
	기타실물자산	○	○	○	○	○
	자동차	○	○	○	○	○
	자동차이외	○	○	○	○	○
부채	부채총액	○	○	○	○	○
	금융부채	○	○	○	○	○
	담보대출	○	○	○	○	○
	부동산 담보대출	○	○	○	○	○
	거주주택 담보대출	○	○	○	○	○
	신용대출	○	○	○	○	○
	신용카드 관련 대출	○	○	○	○	○
	외상및할부미상환액	○	○	○	○	○
	갯잔후 불입금액	○	○	○	○	○
임대보증금	○	○	○	○	○	
순자산	순자산액	○	○	○	○	○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득	경상소득	○	○	○	○	○
	근로소득	○	○	○	○	○
	사업소득	○	○	○	○	○
	재산소득	○	○	○	○	○
	이전소득	○	○	○	○	○
	공적 이전소득	○	○	○	○	○
	사적 이전소득	○	○	○	○	○
	가처분소득	○	○	○	○	○
	균등화 가처분소득_분배		○	○	○	○
지출	복지 지출	○	○	○	○	○
	복지 소비지출	○	○	○	○	○
	복지 전체생활비	○	○	○	○	○
	복지 식료품(외식비포함)	○	○	○	○	○
	복지 주거비	○	○	○	○	○
	복지 교육비(보육비포함)	○	○	○	○	○
	복지 의료비	○	○	○	○	○
	복지 교통비	○	○	○	○	○
	복지 통신비	○	○	○	○	○
	복지 경조비 및 기타지출	○	○	○	○	○
	복지 경조비	○	○	○	○	○
	복지 기타지출	○	○	○	○	○
	비소비지출	○	○	○	○	○
	세금 및 과징금	○	○	○	○	○
	공적 연금 및 사회보험료	○	○	○	○	○
	가구간 이전	○	○	○	○	○
	비영리단체 이전	○	○	○	○	○
	연간 지급이자	○	○	○	○	○
	연간 상환액			○	○	○
연간 지급이자 및 상환액			○	○	○	

구분	항목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채	담보대출용도별(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전(월)세 보증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증권투자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부채상환(담보_대출잔액)	○	○	○	○	○
	사업자금(영농자금포함)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결혼자금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의료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교육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생활비 마련(담보_대출잔액)	○	○	○	○	○
	기타 용도(담보_대출잔액)	○	○	○	○	○
	담보형태(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 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예금,적금,보험담보(담보_대출잔액)	○	○	○	○	○
	기타 담보형태(담보_대출잔액)	○	○	○	○	○
	신용대출용도(신용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전(월)세 보증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증권투자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부채상환(신용_대출잔액)	○	○	○	○	○
	사업자금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결혼자금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의료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교육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생활비 마련(신용_대출잔액)	○	○	○	○	○
	기타 용도(신용_대출잔액)	○	○	○	○	○
	부채보유여부	○	○	○	○	○
가구주	가구주 종사상지위	○		○	○	○
조사	가중치	○	○	○	○	○

□ 참고로 <표 10>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항목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차이는 소득을 중분류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임.

<표 10> 가계동향의 주요 조사항목

구분	수준	항목	
소득	대	소득	
	중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	
	중	사업소득	
	중	재산소득	
	중	이전소득	
	중	비경상소득	
	대	기타수입	
	중	자산변동으로 인한 수입	
	중	부채증가로 인한 수입	
	중	자산이전으로 인한 수입	
	주택	-	월세평가액
		-	전세보증금
-		월세(시급세)	
-		사용면적	
-		주택소유구분 ('90~'97년자료없음·공란)	
지출	대	가계지출	
	대	소비지출	

구분	수준	항목
품목	대	0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대	02. 주류 및 담배
	대	03. 의류 및 신발
	대	04. 주거 및 수도광열
	대	0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대	06. 보건
	대	07. 교통
	대	08. 통신
	대	09. 오락·문화
	대	10. 교육
	대	11. 음식·숙박
	대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소비지출	대	비소비지출
	중	경상조세
	중	비경상조세
	중	연금
	중	사회보장
	중	이자비용
	중	가구간 이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	
기타지출	대	기타지출
	중	자산변동으로 인한 지출
	중	부채감소를 위한 지출
	중	자산이전

2) 세출(지출) 결산서 상 재정지출 항목 식별

-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소득항목을 참조하여 유사한 세출(지출)결산 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추출함.
 - 세출 항목은 '급여', '수당', '연금' 등을 검색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예산사업 분류체계의 조건별로 금액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남.
 - 이 때 지출목적질별 구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값에는 물건비, 상환지출, 예비비 및 기타, 자산취득, 그리고 전출금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 세출 결산서 상 개인 또는 가구로의 이전지출 예산 규모는 63조 6,299억원, 지출금액은 61조 4,123억원임. 이 때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분배로 표기한 세부사업은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의 지출금액은 16,551,934백만원임.

3) 현물급여 포함하여 재정지출 항목 식별

- 전술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과 유사하게 재분배를 구분할 수 있음(엑셀 참조).

<표 1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재정지출 항목의 비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해당여부(A)	해당여부(B)	자산조사여부	최종이전형태	가계금융·복지조사	추경국회확정예산액	지출금액
퇴직급여	○		X	현금	공적연금	2,596,683	2,592,637
퇴직수당	○		X	현금		277,296	256,571
재해보상급여	○		X	현금		112,166	107,135
국민연금급여지급	○		X	현금		18,548,797	17,068,159
퇴직급여	○		X	현금		11,882,115	12,046,736
퇴직수당	○		X	현금		2,192,700	1,930,235
재해보상급여	○		X	현금		126,063	130,936
연금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2,232,092	2,241,637
재해보상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32,451	38,309
퇴직수당급여(사립학교연금기금)	○		X	현금		433,502	421,446
차상위계층 지원	○		○	현금	공적 이전소득	259,330	259,330
장애인의료비지원	△	○	○	현물/현금		500	500
장애인의료비지원	△	○	○	현금		35,274	35,274
기초연금지급	△	○	○	현금	기초연금	18,022	18,022
기초연금지급	△	○	○	현금		7,849,729	7,640,681

세부사업	해당여부(A)	해당여부(B)	자산조사여부	최종이전형태	가계금융·복지조사	추경국회확정예산액	지출금액
보상금	○		X	현금	기타 정부보조금	2,513,017	2,518,702
간호수당	○		X	현금		58,981	57,989
생활조정수당	○		○	현금		12,481	13,211
6.25자녀수당	○		X	현금		212,320	209,699
고엽제수당	○		X	현금		252,425	251,157
무공영예수당	○		X	현금		61,584	60,899
참전명예수당	○		X	현금		592,389	569,208
사망일시금	○		X	현금		7,976	8,668
재해보상금	○		X	현금		11,666	13,860
영주귀국정착금	○		X	현금		1,020	670
체당금지급	○		X	현금		326,004	368,710
참전명예수당	○		X	현금		23	20
진폐위로금지급	△	○	X	현금		67,972	67,802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	○	X	현금		26,872	24,156
산재보험급여	○		X	현금		4,292,324	4,280,055
장애인고용장려금	△	△	X	현금	151,796	158,155	

세부사업	해당여부(A)	해당여부(B)	자산조사여부	최종이전형태	가계금융·복지조사	추경국회확정예산액	지출금액
고용유지지원금	△	△	X	현금	기타 정부보조금	30,704	33,870
고용촉진지원금	○		X	현금		101,327	186,219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	X	현금		254	70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X	현금		417	139
구직급여	○		X	현금		5,122,829	4,686,203
조기재취업수당	○		X	현금		147,495	205,710
광역구직활동지원금	○		X	현금		267	232
자영업자 실업급여	○		△	현금		5,120	3,251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	△	X	현금		525,432	514,698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	X	현금		1,488	1,474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	△	현물/현금		2,300	2,250
장년고용지원금	△	○	△	현금		24,026	27,625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X	현금		60,839	76,320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	현금		80,152	63,264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지원	△	○	X	현금		3,739	3,690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	△	○	X	현금	31	31	
보조공학기기지원	△	○	X	현금	7,200	7,200	

세부사업	해당여부(A)	해당여부(B)	자산조사여부	최종이전형태	가계금융·복지조사	추경국회확정예산액	지출금액
생계급여	○		○	현금	맞춤형기초생활보장	185	185
주거급여지원	△	○	○	현금		17,727	17,727
주거급여지원	△	○	○	현금		1,009,960	934,705
교육급여	△	○	○	현금		144,646	118,077
생계급여	△	○	○	현금		3,386,137	3,398,137
해산장제급여	△	○	○	현금		22,043	23,543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		X	현금	양육수당 등	190	190
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	○	○	현금		10,917	10,917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	X	현금		1,219,200	1,180,277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	○	현금		72,347	72,347
장애수당(기초)	△	○	○	현금	장애수당	77,582	77,134
장애수당(차상위 등)	△	○	○	현금		55,059	55,507
장애연금	△	○	X	현금		558,077	558,077

제4장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1. 형평성 분석의 이론적 검토

- 여기서는 세출 결산서 중 이전지출과 가계조사(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소득 항목과 규모를 비교한 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에 활용할 자료를 선정하고자 함.
- 특히 미시자료에 기초한 공적 이전소득은 가구단위의 평균소득을 측정하는데 강점이 있지만 총량을 측정하는 측면에서는 불완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됨.
 -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표본조사에 기초한 미시자료와 세출 결산서 상 이전지출 거시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함.
 - 이러한 원인으로 ① 조사항목의 불명확성, ② 과소보고, ③ 연단위(또는 월평균) 소득 측정의 한계, 그리고 ④ 대표가구원에 의한 응답 오류 등이 존재할 수 있음.³⁾
 - 또한 세출 결산서의 이전지출(세부사업)의 경우 가구 단위 자료가 아니므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함.
- 3장에서 도출한 세출 결산서 세부사업, 즉, 재정지출 항목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공적 이전소득과 비교하여 유형화하면 <표 12>의 1열과 같

3) 기초생활보장과 같이 자산조사를 통해 월단위로 급여가 제공되는 이전소득은 연단위(또는 월평균)로 측정하는 조사에서 개인 또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음.4)

- 2016년 세출 결산서 상 지출금액은 65,908,968백만원이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의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 53,196,692백만원(지출금액 대비 81%), 49,630,000백만원(지출금액 대비 75%)임.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연간소득을 조사한 것이므로 공적 이전소득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였음.
- 가계동향조사(연간)는 연간기준 월평균을 조사한 것이므로 공적 이전소득(각 항목)에 12를 곱하여 연간으로 변환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합산하였음.5)

<표 12> 2016년 세출 결산서와 가계조사 항목별 구성

(단위: 백만원, %)

	지출금액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공적연금	37,093,131	56.3%	53,196,692	100%	27,300,000	55.0%
기초(노령)연금	7,658,703	11.6%			9,930,000	20.0%
공적 이전소득	295,104	0.4%			12,400,000	25.0%
기타 정부보조금	14,415,207	21.9%				
맞춤형기초생활보장	4492374	6.8%				
양육수당 등	1263731	1.9%				
장애수당	690,718	1.0%				
	65,908,968	100%	53,196,692	100%	49,630,000	100%

- 4)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공적 이전소득을 중분류 수준으로 조사·제공하고 있으나, 항목의 수와 포괄범위가 제한적임.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포괄범위가 넓지만, 항목을 통합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5) 가계동향조사 설계서 및 코드집에 따르면,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으로 정의되는데 비교가능성을 위해 세금환급금은 제외하였음.

2. 재정정책이 소득분위별 가구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여기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재정정책이 소득분위별 가구에 미치는 효과, 즉,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규모 및 분포를 분석함.

- 이를 위해서 우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0분위를 구분한 후 각 분위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 등의 규모와 분포를 제시하였음.
 - 이 때 가처분소득을 가구원수(\sqrt{n})에 가구균등화(equivalent scale)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 분위기를 구분할 때 활용한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 경계값은 2열에 제시하였음.
 - 1분위 경계값은 (가구 단위 가처분소득 기준) 1,014만원 미만, 2분위 1,014만원 이상 1,892만원 미만, 3분위 1,892만원 이상 3,050만원 미만이고, 8분위 경계값은 9,065만원 이상 11,530만원 미만, 9분위는 11,530만원 이상 15,750만원 미만, 그리고 10분위는 15,750만원 초과임.

- 9-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각 소득원천별 점유율은 근로소득의 43.9%, 사업소득의 48%, 재산소득 48.9%,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각각 15.8%, 6.8%,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47%로 나타남.
 - 더불어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과징금 점유율은 58.5%,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는 41.3%임.

- 1-4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각 소득원천별 점유율은 근로소득의 11.7%, 사

업소득의 12.2%, 재산소득 20%,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각각 47.4%, 70.9%,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12.47%로 나타남.

- 더불어 이들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과징금 점유율은 8.8%,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는 13.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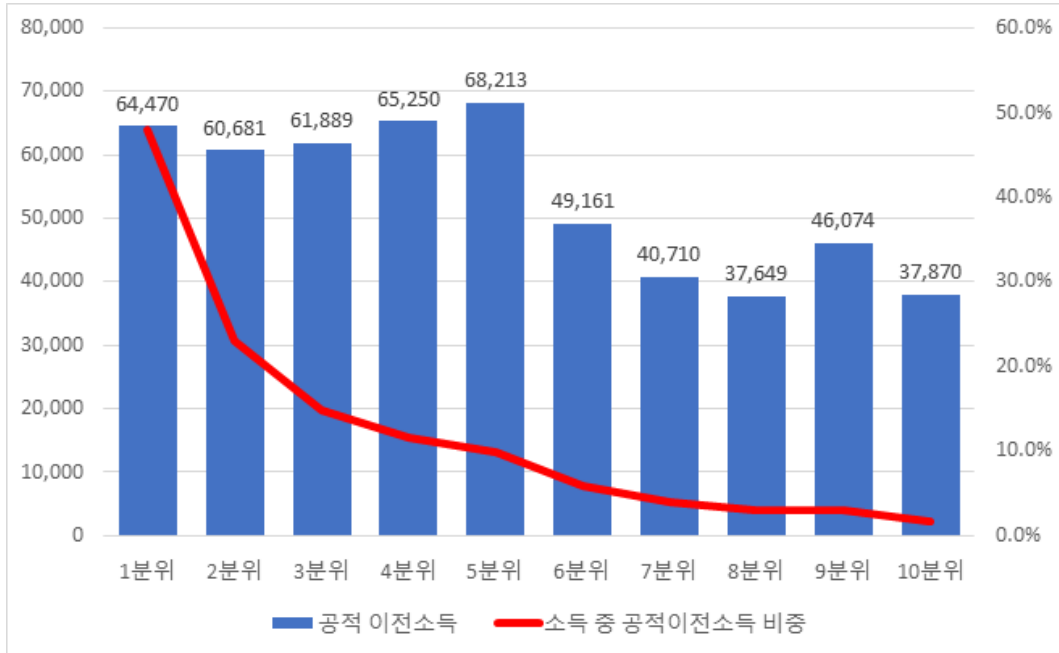
□ 공적 이전소득이 가구 소득원천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531,967억원이며,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사적이전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5.9% 수준으로 나타남(구체적인 수치는 <표 13>과 [그림 3] 참조).

□ 여기서 발견되는 주된 특징은 공적 이전소득의 귀착이 가장 낮은 분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소득원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임.

- 이 때 분위별로 공적 이전의 귀착은 5분위(68,213억원)가 가장 높고, 이후 4분위(65,250억원), 1분위(64,470억원), 3분위(61,889억원), 그리고 2분위(60,681억원)으로 순으로 나타남.
- 1분위의 경우 소득원천 중 48%, 2분위는 22.9%, 3분위는 14.9%, 4분위는 11.6%가 공적이전 소득 비중임.
- 5분위의 경우 소득원천 중 9.8%, 6분위는 5.8%, 7분위는 4%, 8분위는 3%, 그리고 9분위는 1.6%가 공적이전 소득 비중임.

[그림 3] 분위별 공적 이전소득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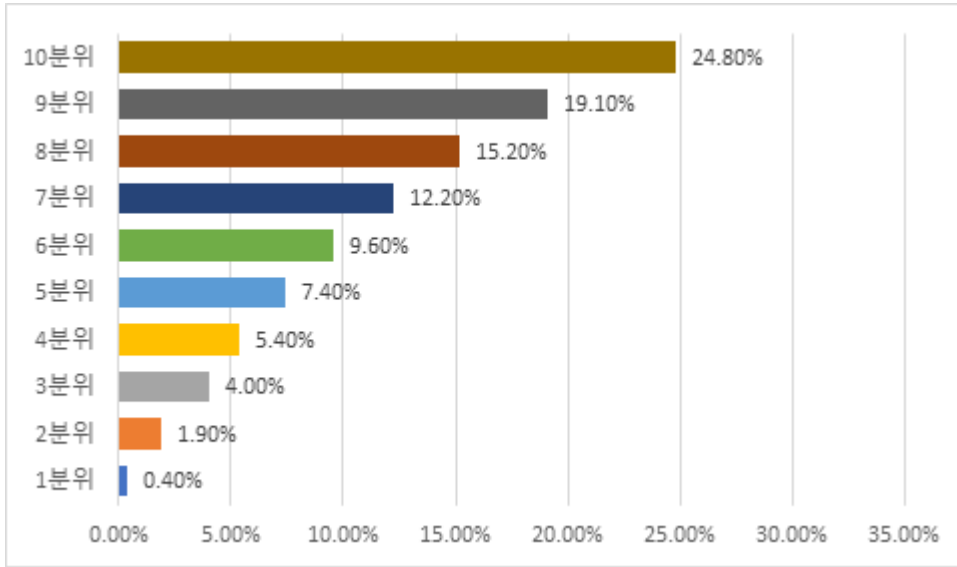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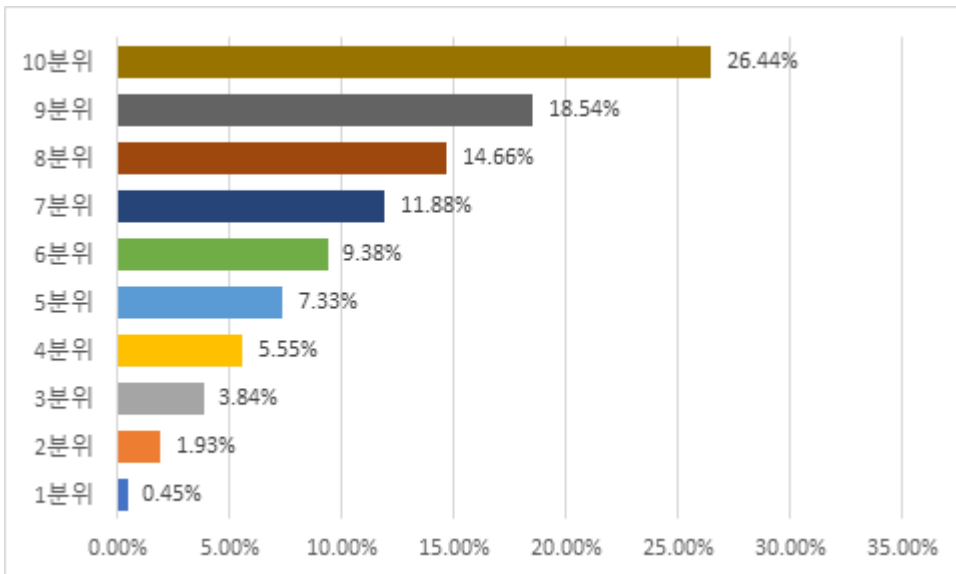
□ [그림 4]는 근로소득(상단)과 가처분소득(하단)의 분위별 소득 점유율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이 때 1분위와 2분위, 그리고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점유율이 낮아지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남.

[그림 4] 분위별 소득 점유율(상: 근로소득, 하: 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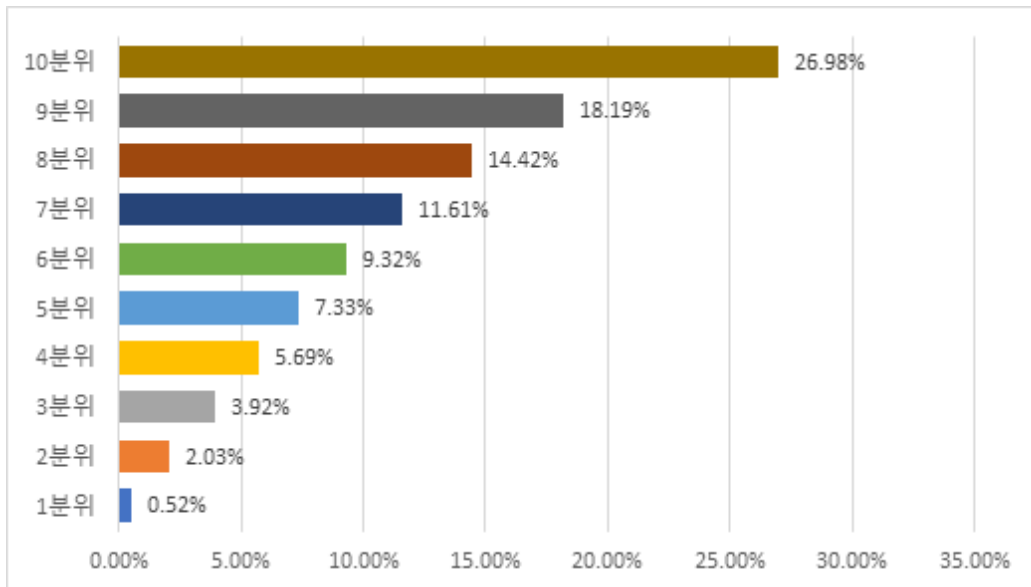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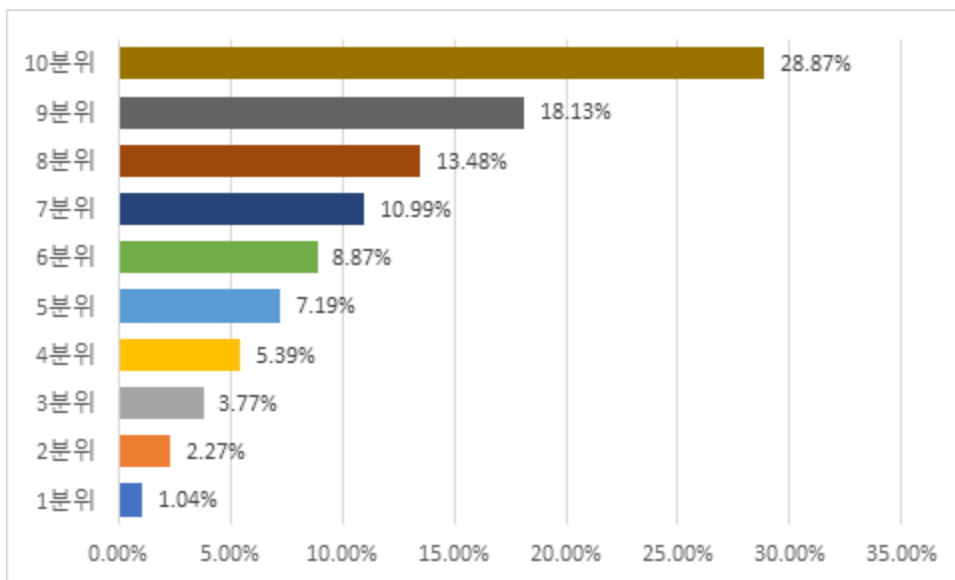
<근로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가처분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을 활용하여 시산한 10분위분배율은 3.72이며, 소득5분위 배율은 17.71로 나타남. 이 때 공적 이전소득을 추가하여 시산한 10분위분배율은 3.05이며, 소득5분위 배율은 11.43으로 나타나 소득분배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10분위분배율은 상위 소득 20%의 소득 합계에 대한 하위 소득 40%의 소득 합계의 비율을 말함.
 - 이 때 소득5분위 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평균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즉, 비율을 말함.

- 여기에 사적 이전소득을 포함시킬 경우 10분위분배율은 2.83이며, 소득5분위 배율은 9.75로 나타나 소득분배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시산한 10분위분배율은 3.77이며, 소득5분위 배율은 14.19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 이전
 - 구체적인 사항은 <표 13>과 [그림 3] 참조

<표 13>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규모 및 분포

(단위: 억원, %)

분위	분위 경계값 (만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소비지출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세금 및 과징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1	~1,014	23,574	0.4%	12,809	0.6%	6,975	1.8%	64,470	12.1%	26,403	18.4%	3,906	1.0%	5,861	1.1%
2	~1,892	111,810	1.9%	43,041	2.0%	16,073	4.1%	60,681	11.4%	32,995	22.9%	5,287	1.3%	11,927	2.2%
3	~3,050	234,589	4.0%	73,305	3.5%	21,350	5.5%	61,889	11.6%	24,624	17.1%	10,232	2.6%	21,933	4.0%
4	~4,327	316,527	5.4%	128,046	6.1%	33,444	8.6%	65,250	12.3%	17,962	12.5%	15,602	3.9%	31,978	5.8%
5	~5,712	438,628	7.4%	148,883	7.1%	28,951	7.5%	68,213	12.8%	13,439	9.3%	19,885	5.0%	42,212	7.7%
6	~7,276	569,082	9.6%	182,484	8.7%	31,348	8.1%	49,161	9.2%	8,411	5.9%	23,876	6.0%	54,302	9.9%
7	~9,065	721,715	12.2%	230,546	10.9%	23,912	6.2%	40,710	7.7%	6,439	4.5%	34,717	8.7%	69,447	12.7%
8	~11,530	898,257	15.2%	277,020	13.2%	36,461	9.4%	37,649	7.1%	3,706	2.6%	51,467	13.0%	83,586	15.3%
9	~15,750	1,129,056	19.1%	357,404	17.0%	42,046	10.8%	46,074	8.7%	5,371	3.7%	74,477	18.8%	99,921	18.3%
10	15,750~	1,466,896	24.8%	652,419	31.0%	147,868	38.1%	37,870	7.1%	4,428	3.1%	157,463	39.7%	125,770	23.0%
합계		5,910,133	100%	2,105,958	100%	388,428	100%	531,967	100%	143,778	100%	396,913	100%	546,936	100%

3. 재정정책별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 앞서 세출 결산서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로 이전되는 현금/현물 급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공적 이전지출(소득)이 소득분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하에서는 가구 소득의 분류체계를 분석하기 전에 소득, 소비, 부 간의 회계적 관계에 대해 개략적으로 제시함. 이 때 소득, 소비, 자산은 모두 개인의 경제적 자원의 크기를 반영하는 지표들로서 개인의 경제적 웰빙(economic well-being)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임. 특히,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들 간의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득, 소비, 부를 연계하는 통계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임.
 - 소득, 소비, 부 간의 회계적 관계는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인의 예산제약식(budget constraint)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음.

$$\begin{aligned}
 \text{부}_t &= \text{부}_{t-1}(1+r_t) + \text{소득}_t - \text{소비}_t \\
 &= \text{부}_{t-1} + \text{부}_{t-1}r_t + \text{소득}_t - \text{소비}_t \\
 &= \text{부}_{t-1} + \text{총소득}_t - \text{소비}_t
 \end{aligned}$$

- 위 식에서 부_t는 t기말(혹은 t+1기초)의 순자산, 소득_t는 t기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소비_t는 t기의 소비지출을 나타내며, r_t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자본이득)을 모두 포함하는 추상적인 자산수익률을 나타냄.
- 따라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나타내는 소득_t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는 $\text{부}_{t-1}r_t$ 의 합으로 볼 수 있음.

- 만일 부채가 자산보다 더 커서 $b_{t-1}r_t$ 가 음의 값을 가진다면 개인의 총 소득은 그만큼 낮아지게 됨.
- 단, 위 식에서 모든 소득은 세금과 이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을 나타내며, 이전소득은 음(-)의 이전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단순화를 위하여 증여나 상속과 같은 자본이전(capital transfer)은 식에서 생략

□ 소득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시장소득(세전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 사적 이전소득 : 가구간이전, 할인혜택, 기타이전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 공적 비소비지출 :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 이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며, 소득분배지표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이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작성은 소득균등화 후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배효과를 추정함.

- 소득균등화 : 가구원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이 다른 점을 반영하여 가구원수에 따라 표준화하기 위해 소득을 조정(* 균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제곱근으로 나눔)
- 반면 통계청의 경우 소득분배지표 산출을 위해 가구 가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여 개인(인구)단위 지표로 전환하여 발표함.

□ 이하에서는 주요 소득분배지표는 지니계수,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 등을 소개함.

□ 지니계수

-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사이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계산

$$G = \frac{2}{n^2 \mu} \sum_i (i - \frac{n+1}{2}) Y_i p_i$$

- 단, μ : 전체소득의 산술평균, i : 소득 크기별 순위(rank), n : 가구수, Y : 소득, p_i : 전체소득 기준 i 가구(또는 개인)의 표본추출가중치

- 지니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 여러 소득불평등도 지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 지수로써 통계청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⁶⁾

-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는 지니계수와 비교하여 인구집단별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⁷⁾

6) 여기서 엔트로피 지수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가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불평등도를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하위집단의 특성(연령, 성별, 지역 등)으로 분해를 할 경우 집단 내 효과(within-group effect)와 집단 간 효과(between-group effect) 뿐 만 아니라, 잔차(residual) 또는 겹침(overlap)이라 일컫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난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임. 즉, 지니계수는 인구 분해가능성(decomposability) 공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인구 하위집단으로의 분해 기법의 적용 및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구체적인 내용은 Box 참조).

7) 반면에, 특정 시점 간 인구구조 변화, 즉, 하위집단의 변화가 주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태적 분해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동태적 분해 기법은 정태적 분해 기법과 마찬가지로 집단 내 효과와 집단 간 효과로 구분되지만, 전자는 다시 ① 불평등 변화 효과, ② 인구구성 변화에 의한 효과로 구분되고, 후자는 ③ 인구구성 변화가 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④ 인구 하위집단의 평균소득의 변화 효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분해 기법은 반정호(2011), 김문

○ GE($\alpha = 0$)의 산식은 다음과 같음.

$$I(0) = \sum_{i=1}^n \frac{w_i}{\sum_{i=1}^n w_i} \cdot \ln\left(\frac{\bar{y}}{y_i}\right)$$

- 여기서 n 은 전체 표본에서 가구의 수, w_i 는 가구 i 의 가중치 y_i 는 가구 i 의 소득, 그리고 \bar{y} 는 $\sum_{i=1}^n \left(w_i / \sum_{i=1}^n w_i \right) \cdot y_i$ 로써 가구 소득의 산술평균임.
 - 이 때 α 는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로써 작을수록(클수록) 저소득(고소득) 계층의 소득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포착(Cowell, 2000).
- 1인 및 2인, 그리고 3인 이상 가구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분해 기법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I(0) &= \sum_{k=1}^K \frac{\sum_{i \in k} w_i}{\sum_{i=1}^n w_i} I_{0k} + \sum_{k=1}^K \frac{\sum_{i \in k} w_i}{\sum_{i=1}^n w_i} \ln\left(\frac{\bar{y}}{\bar{y}_k}\right) \\ &= \sum_{k=1}^K v_k I_{0k} + \sum_{k=1}^K v_k \ln\left(\frac{\bar{y}}{\bar{y}_k}\right) \end{aligned}$$

- 여기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집단 내(within group) 불평등도이며, 두 번째 항은 집단 간(between group) 불평등도를 의미
- K 는 하위집단의 수를 의미하며, v_k 는 하위집단 k 에 속한 가구의 (가중된) 비율로 정의됨. 하위집단 k 의 평균소득은 \bar{y}_k 로 정의할

길 외(2012), 무커지와 쇼록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젠킨스(Jenkins, 1995), 그리고 피에힐 등(Peichle et al., 2012)을 참고하면 된다.

수 있으며, 집단의 불평등도는 $I_{0k} = \sum_{i \in k} \left(\frac{w_i}{\sum_{i \in k} w_i} \right) \cdot \ln(\bar{y}_k / y_i)$ 임.

- 아래 Box는 전술한 지니계수와 일반화된 엔트로피 지수의 기초가 되는 공리체계를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두 지표의 차이는 분해성에 기인함.

Box.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

-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공리체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 공리에 기초함.

1. 익명성(anonymity)

- 대칭성(symmetry)이라고도 불리며, 소득불평등도는 사회구성원의 소득분포 외에 다른 특성이 변하더라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즉 사회구성원의 변화는 없고 그들의 소득이 서로 바뀌는 경우(permutation)에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음. 예로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각 가구의 순서별로 A=(1,2,3)에서 B=(3,2,1)로 변화하였을 때 상대적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음.
- 이 원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불평등도 비교에 있어 기본 전제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는 모두 이 원칙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나 만약 두 집단을 구성하는 그룹이 가족원 수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면(예를 들어, A의 구성원은 부부2인만이 한 가구를 구성하고, A2의 구성원은 부부와 자녀 등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인 경우), 각 구성원의 소득분포가 동일하더라도 두 집단의 소득불평등도가 같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소득동차성(income homogeneity)

-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모두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화가 없다는 의

미임. 예로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A=(5,8,10)$ 에서 모두 두 배 증가하여, $B=(10,16,20)$ 으로 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음.

- 이 소득동차성은 비율적인 곱으로 변하는 경우와 더하는(빼는) 것으로 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인 소득동차성을 규모비의존성(scale independence)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경우를 변환비의존성(translation independence)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음(Amiel and Cowell, 1999). 즉, 변환비 의존성은 원래 소득분포 A 에서 사회구성원 모두 5만큼 소득이 증가한 $B=(10,13,15)$ 로 되는 경우도 소득불평등도는 변함이 없다고 간주
- 분산(variance)이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는 규모비의존성을 만족시키지 못함. 또한 절대적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수인 절대적 지니계수 (absolute Gini coefficient) 역시 규모비의존성의 원칙에 위배됨. * 모든 사회구성원의 소득이 2배가 되면 분산은 4배가 된다. 따라서 규모비의존성에 위배되며, 표준편차와 절대적 지니계수도 정의에서 살펴보면 역시 위배됨을 쉽게 알 수 있다.

3. 인구동차성(population homogeneity)

- 인구비의존성(population independence)이라고도 하며, 기존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분포와 동일한 소득분포를 가진 사회구성원이 복제되어 두 소득분포가 합해지는 경우도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없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소득분포가 $A=(5,8,10)$ 인 사회에 동일한 쌍둥이들이 등장하여 $B=(5,5,8,8,10,10)$ 이라는 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없다.

4. 이전원칙(transfer principle)

- 피구-달튼(Pigou-Dalton principle)이라고도 하며, 사회구성원의 전체 평균소득의 변함이 없이 부자가 빈자에게 소득을 이전(mean preserving income transfer)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다는 의미임. 예로 소득분포가 $A=(1,4,7,10,13)$ 인 사회에서 $B=(1,5,6,10,13)$ 인 사회로 변하는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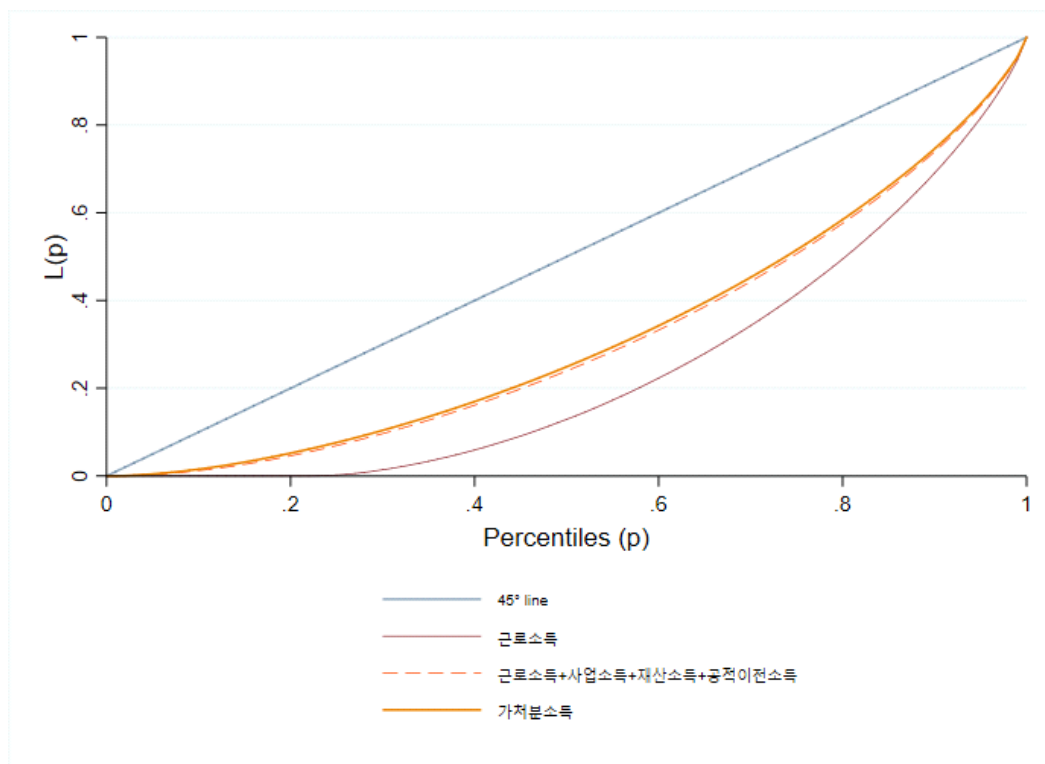
- 분산과 로그분산은 이 원칙을 위배하며, 후술하는 국화지수(polarization measure)들은 이 원칙을 깨고 등장한 지수들임.

5. 분해성(decomposability)

- 이 원칙은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전체를 구성하는 이부분의 소득불평등도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 집단의 불평등도가 변하는 경우 전체의 불평등도도 같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로 두 집단의 소득분포가 각각 $A=(3,10,11)$, $B=(5,6,13)$ 인 경우 소득분포가 $C=(7,9)$ 인 제3의 집단과 각각 통합되어 $A1=(3,7,9,10,11)$, $B1=(5,6,7,9,13)$ 으로 변하는 경우 $A1$ 과 $B1$ 의 소득불평등도 순위는 통합되기 이전인 A 와 B 의 소득불평등도의 크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 분해성을 제외한 앞의 네 가지 원칙이 상대적 소득불평등도가 로렌츠 곡선을 통한 소득불평등도 크기 비교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분해성 원칙에는 위배되더라도 앞의 네 가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불평등도 지수라면, 로렌츠 일치(Lorenz consistence)와 동일한 소득불평등도 크기 비교를 보장함.
- 일반화된 엔트로피집단지수(generalized entropy class measure)는 위 5가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음(Cowell 1995). 이들은 집단내 불평등도와 집단 간 불평등도로 쉽게 분해되며 분해된 각 불평등도의 합은 전체의 불평등도와 일치함. 그러나 Atkinson류의 불평등도 지수는 집단 간과 집단 내 불평등도로 분해되나 합이 일치하지 않음. 지니계수의 경우 부분집단의 인구분포가 겹치지 않는 경우 분해되나 겹치는 경우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칙을 부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함.

- [그림 5]는 '근로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그리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로렌츠 곡선을 제시한 것임.
 - 앞서 다양한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경우 2~3분위 사이까지 누적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사업, 재산, 그리고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할 경우 누적소득이 발견되며, 소득분배의 개선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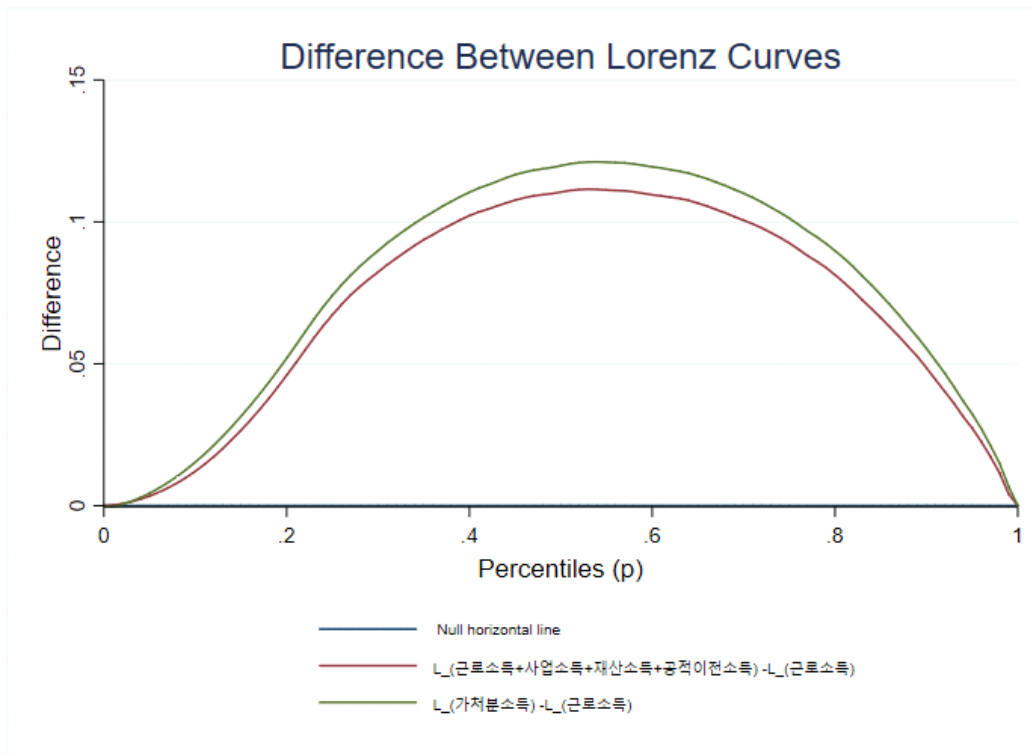
[그림 5] 로렌츠 곡선



- [그림 6]은 앞서 살펴본 로렌츠 곡선 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음. 이 때 'Null horizontal line'은 45°선이며, 갈색선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에서 '근로소득'을 차감한 것임. 즉, 이 곡선의 높이는 각 분위에 소득원천이 얼마나 분배되었는지를 의미함.

- 이 때 나타나는 특징은 1~3분위 사이 구간에서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의 경우 증가율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율로 증가함.
- 또한 5분위를 기점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해당 소득원천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6] 로렌츠 곡선의 격차: 소득항목별



- <표 14>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도출한 지니계수와 소득원천의 분배효과를 요약한 것임.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가중치를 미적용할 경우 0.379968,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0.363857로 추정됨(구체적인 사항은 <표 14>과 [그림 5] 참조).
- 공적 이전소득(가중치 적용이 약 7% 정도 소득원천별 소득분배지표 또는 재분배 개선효과(변화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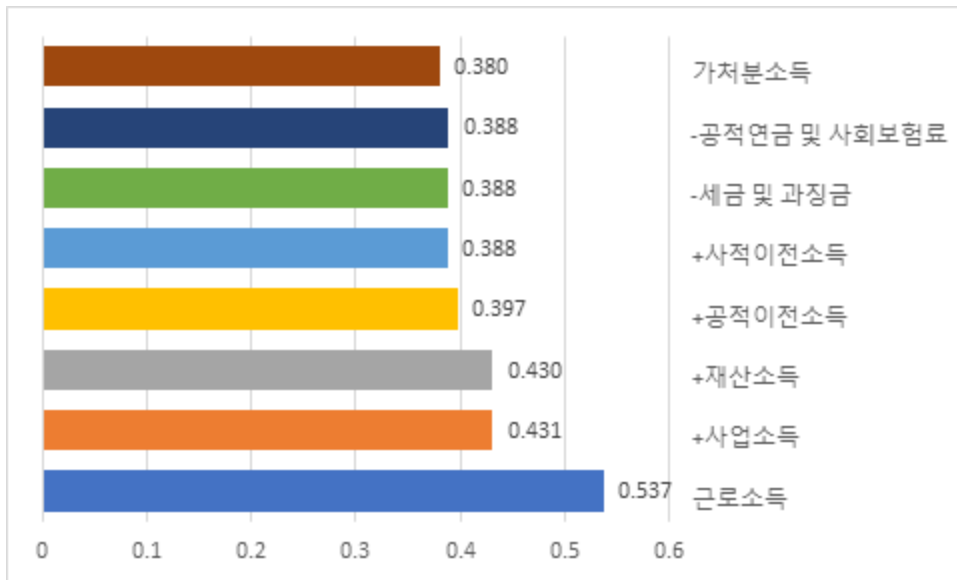
- 이어 사적이전소득은 약 2.2%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금 및 과징금은 약 0.22%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견된 반면,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은 소득분배지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4> 지니계수 및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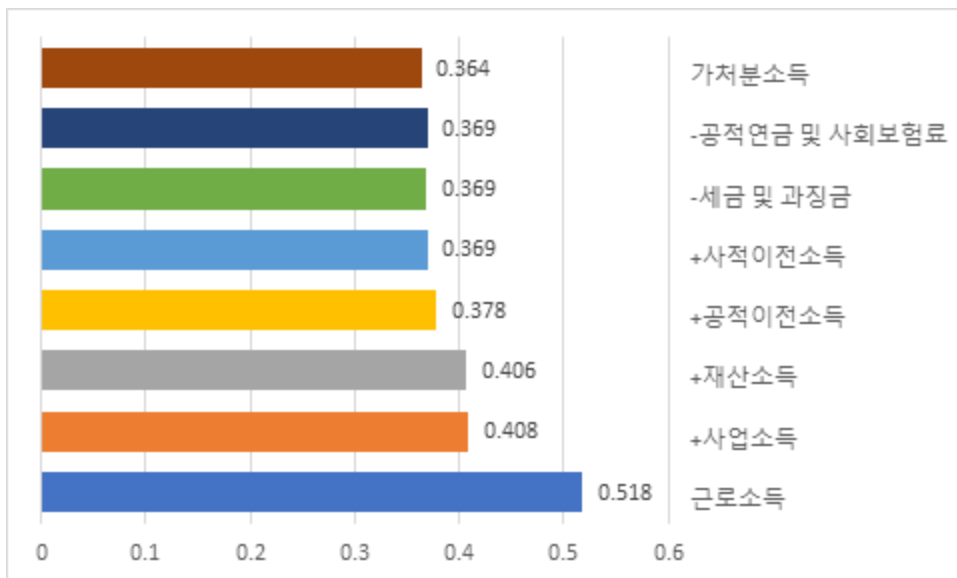
	소득원천 추적 방식에 따라 추정된 지니계수			
	가중치 미적용	변화율	가중치 적용	변화율
근로소득	0.536927		0.517622	
+사업소득	0.430786		0.40825	
+재산소득	0.430356	-0.10%	0.406233	-0.49%
+공적 이전소득	0.39711	-7.73%	0.377912	-6.97%
+사적 이전소득	0.387562	-2.40%	0.369449	-2.24%
-세금 및 과징금	0.387506	-0.01%	0.368642	-0.22%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0.388044	0.14%	0.369451	0.22%
가처분소득	0.379968	-2.08%	0.363857	-1.51%

[그림 7] 분위별 소득 점유율(상: 가중치 미적용, 하: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제5장 총액 및 재원배분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측정

□ 예산 총액 및 재원배분 변화 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적 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구축

○ 재정정책의 제도 변화를 분석 할 수 있는 모형 구축

- (예시) 재정지출 중 복지급여 정책 변화는 지급액 또는 지급조건 변화를 의미하며,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 (예시) 조세정책 변화는 소득세율 또는 소득구간 개편을 의미하며, 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

□ 정부 예산 총액 및 재원배분과 재정정책 제도 변화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 정부 예산 구조 변화에 따른 효과 분석

- 분석 대상 사업의 예산 변화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시나리오 분석

○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사전적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 시나리오 분석

- 재정정책 변화 시나리오 분석은 조세정책, 재정지출 제도 변화 분석

1. 총액 및 재원배분 변화 시나리오 설정

2. 분석 결과

제6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첫째, 세출 결산서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가구에게 이전되는 지출항목을 식별한 후, 둘째,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음. 주요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세출 결산서를 활용한 재정지출 유형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리고 가계동향조사는 세출 결산서 상 이전지출 총량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냄. (미시자료와 거시자료의 불일치) 미시자료의 공적 이전소득 항목(합계)은 세출 결산서 상 지출금액 대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81%,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즉,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간 불일치 문제가 나타남.
 - 둘째, (조사항목의 불명확성) 재정지출(세부항목)의 다변화와 특성화에도 불구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이를 ‘공적 이전소득’으로 통합·제공하고 있으며, 가계동향조사 경우도 재정지출을 충분히 식별할 소득항목을 제공하지 않음.
 - 셋째, (과소보고와 소득측정의 한계, 대표가원원에 의한 응답오류)
- 더불어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저소득 가구(1~2분위) 소득 중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3~48% 수준으로 나타남.

- 둘째, 공적 이전지출의 귀착, 즉, 수혜금액을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별로 구분할 경우 '5분위 → 4분위 → 1분위 → 3분위 → 2분위' 순으로 나타남. 이는 이전지출이 반드시 자산조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 셋째,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분배지표 개선 효과는 약 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적 이전을 포함할 경우 약 9.2% 수준으로 상승함.

2. 정책적 시사점

-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간 불일치 조정) 재정당국의 재정정책(재정지출, 조세지출, 현물급여 등)의 효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와 거시자료 간 불일치의 조정이 요구됨.
- 미시자료의 공적 이전소득 조사항목을 통합하여 제공하지 말고, 세부항목에 대한 제공이 필요함. 이 때 세부항목은 공적 이전지출 항목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
 - 1단계 : 재정지출(항목)을 선별
 - 2단계 : 미시자료의 조정
 - 3단계 : 미시자료 상에서 항목 생성
 - 4단계 : 소득지출 항목별로 분포정보를 조정된 총계에 적용하여 추정

Box. 거시지표의 한계 극복 사례

-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한계는 분포를 알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한계점이 있음. 또한 거시경제지표와 미시 자료를 이용한 가구단위 지표와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와 유럽통계국(Eurostat)이 2011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에서는 기존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구그룹 간의 격차에 대한 국민계정의 개념 및 총계와 일치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공동노력에 착수
 - 16개의 국가가 참여하였으며,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일치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방법론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제시
- OECD·Eurostat(2011)의 목적은 국민계정체계의 정의 및 총계 수치를 최대한 고수하면서 불평등 척도를 작성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임.

<표 15> 소득, 소비, 저축 : 국민계정체계의 주요 거래 및 관계

Income resources - received by households		
B2	Operating surplus from actual and imputed rentals	
B3	Mixed income from owned unincorporated enterprises and from own account production	
D1	Compensation of employees, including social contributions	
D4	Property income , e.g. interest, dividends, rents on land	
Income uses - paid by households		
D4	Property income, e.g. interest, rents on land	
B5	Primary income	= B2+B3+D1+ D4 resources - D4 uses
Income resources - received by households		
D62	Social benefits in cash	

D7	Other current transfers	
Income uses - paid by households		
D5	Current taxes on income and wealth	
D61	Social contributions	
D7	Other current transfers	
B6	Disposable income	= B5+D62+D7 resources-D5-D61-D7uses
D63	Social Transfers in Kind	
B7	Adjusted disposable income	= B6+D63

가구의 경제적 웰빙을 측정함에 있어 GDP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의 한계는 분포를 알 수 없다는데 가장 큰 한계점이 있다. 또한 거시경제지표와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구단위 지표와의 불일치 문제도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와 유럽통계국(Eurostat)이 2011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에서는 기존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구그룹 간의 격차에 대한 국민계정의 개념 및 총계와 일치하는 척도를 개발하려는 공동노력에 착수하였다. 16개의 국가⁸⁾가 참여하였으며, 미시자료와 거시자료를 일치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 방법론에 의해 추정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 **(표본조사의 대표성 제고: 행정자료 결합)** 현실적으로 소득의 파악은 표본조사에 의존하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며, 소득 측정에 있어 대표성은 특히 고소득층의 무응답이 문제가 됨.
-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가구단위 조사통계의 한계점으로 지적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예를 들어,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도

8) 호주,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 (현물급여 및 조세지출 고려) 소득재분배 효과성 평가 요소 관련
 - 향후 조세지출에 대한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및 효과성 평가가 요구됨. 조세는 재원확보의 주된 기능과 함께 조세지출로 여러 대상과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예로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8년 근로빈곤층과 저소득층 노동공급 유인 제고를 위해 도입·확대되었으나, 재정당국의 효과성 점검이 실시되지 않음.
 - 동일 목적의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성과 어떤 지출형태가 더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함.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 물론 재정자료(우리의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소득의 파악은 조사통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때와는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첫째,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점은 행정자료와 조사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 발생 가능성 존재함.
 - 조사를 통해 파악된 가구소득과 행정자료를 통해 파악된 가구소득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값을 해당 가구의 소득으로 확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 이러한 불일치 발생시 아무런 근거 없이 단순히 큰 값을 참값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응답자의 과소보고 경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나, 가구구성의 변화, 소득산정 기간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상향편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
 - 둘째,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고소득층 가구에 대한 가중치의 문제가 발생함. 소득에 대한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무엇보다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한 가구소득의 파악은 시장소득 외 조세부담률 및 가처분소득의 파악을 위해서도 시도될 수 있음. 가구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동향조사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표본조사에 기초한 미시자료와 국민계정상의 가계처분가능총소득 거시자료 간의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미시자료에서는 가구의 조세부담 규모가 과소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국의 경우, 가중치 조정을 통해 소득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⁹⁾ 또한 행정자료와 조사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 추정을 시도하고 있음.¹⁰⁾ 이와 같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행정자료와의 결합을 통해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한편, 행정자료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소득을 파악할 뿐이므로 결혼·분가·동거 등과 같은 가구형성(household formation)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음. 따라서 가구형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청이 소득파악을 위한 행정자료 결합의 집중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

9) Changes in U.S. Family Finances from 2010 to 2013: Evidence from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Federal Reserve Bulletin September 2014, Vol. 100, No. 4.

10) Bricker et al., "Measuring Income and Wealth at the Top Using Administrative and Survey Data,"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16 (1): 261-331.

<참고문헌>

- 김문길·김태완·박형준 (2012)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문길 (2013) “가구구성 변화와 소득불평등, 그 정책 함의” 《보건·복지 Issue & Focus》 214호.
- 박기백 (2014) “유형별 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재정학연구》 7(2): 95-116.
- 반정호 (2011) “가구 구성방식의 다양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8(1): 85-111.
- 성명재·박기백 (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57(4): 5-37.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병인 (2006) “소득유형별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이용한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분석” 《공공경제》 11(2): 37-64.
- 통계개발원 (2013) 《한국의 사회동향 2013》 통계청.
- An, C. B. and Bosworth, B. (2013) *Income Inequality in Korea: An Analysis of Trends, Causes, and Answer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 Cowell, F. A. (2000) “Measurement of inequality” In A. B. Atkinson and F. Bourguignon (Eds.),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ume 1. Handbooks in Economics*, vol. 16, New York and Oxford: Elsevier Science, North-Holland, 87-166.
- Brandolini, A. and D'Alessio, G. (2001) “Household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Working paper series: Luxembourg Income Study 254: 1-49.
- Burtless, G. (1999) “Effects of Growing Wage Disparities and Changing Family Composition on the US Income Distribution” *European Economic Review* 43(4): 853-865.
- Eurostat(2013), *Statistical matching of EU-SILC and the Household Budget Survey to compare poverty estimates using income, expenditures and material deprivation, Methodologies and Working papers.*

- Jenkins, S. P. (1995) "Accounting for Inequality Trends: Decomposition Analysis for the UK, 1971-86" *Economica* 62: 29-63.
- Kakwani, N. (2000) "On Measuring Growth and Inequality Components of Poverty with Application to Thailand" *Journal of Quantitative Economics* 16(1): 67-80.
- Lee, M. and Carr, D. (2009) "Does the Context of Spousal Loss Affect the Physical Functioning of Older Widowed Persons? A Longitudinal Analysis" *Research on Aging* 29(5): 457-487.
- Martin, M. A. (2006) "Family Structure and Income Inequality in Families with Children, 1976 to 2000" *Demography* 43(3): 421-445.
- Massey, D. S. (2007) *Categorically Unequal: The American Stratification System* New York: Russell Sage Found.
- Mookherjee, D. and Shorrocks, A. F. (1982) "A Decomposition Analysis of the Trend in UK Income Inequality" *The Economic Journal* 92: 886-902.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 OECD(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 OECD·Eurostat(2011), *Distributional Measures across Household Groups in a National Accounts Framework*, Working Paper No. 53.
- OECD(2013a), *OECD Framework for Statistics on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 OECD(2013b),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Stiglitz, J. E., Sen, A. and J. P. Fitoussi(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Piechl, A., Pestel, N. and Schneider, H. (2012) "Does Size Matter?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8(1): 118-141.
- Shorrocks, A. F. (1999) "Decomposition Procedures for Distributional Analysis: A Unified Framework Based on the Shapley Valu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1-28.
- Western, B., Bloome, D. and Percheski, C. (2008) "Inequality among American Families with Children, 1975 to 2005"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6): 903-920.

UNECE(2011), The Canberra Group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Second Edition, ECE/CES/11, Geneva.